

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·고용제한 표시방법 (제28조 관련)

구분	표시문구	표시방법
청소년 출입·고용 금지업소	19세 미만 출입· 고용금지업소	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,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.

비고: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
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